

[별표 1의2] <신설 2011.1.24>, <개정 2012.9.28, 2016.4.1., 2016.12.29., 2022. 12. 21.>

신용공여의 범위(제1-3조관련)

계정	대분류	소분류
일반 계정	B/S 난내 (대출채권)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유가증권)	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사모사채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 ²⁾
	B/S 난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원화대출약정 ⁵⁾ , 외화대출약정 ⁵⁾
특별 계정	B/S 난내 (대출채권)	유가증권담보대출금, 부동산담보대출금, 신용대출금, 어음할인대출금, 지급보증대출금, 기타대출금
	(유가증권)	기업어음, 대여유가증권, 사모사채
	(기타)	기타 예금중 환매조건부채권매수, 여신성 가지급금, 보험영업 이외의 거래에서 발생한 미수금, 대주주(특수관계인을 포함) 또는 자회사에 대한 예치금 ²⁾
	B/S 난외	자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원화대출약정 ⁵⁾ , 외화대출약정 ⁵⁾

주1) 감독원장이 정하는 신용등급별 위험계수가 1.4% 미만인 자산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다만, 법 제106조제1항제5호의 대주주 및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한도 및 법 제111조제2항 내지 제4항의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규제 적용시에는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지 않음

주2) 보험료 수납 및 대출 업무 등 일상적인 업무 수행을 목적으로 금융기관에 개설된 보험회사의 계좌로 입금한 금액으로서 입금일로부터 3 영업일(다만, 특별계정에 속하는 보험료는 감독규정 제5-7조제2항에서 정한 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및 특정한 청약 및 집합투자증권의 가입을 위해 예치한 금액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주3) 보험회사가 장내파생상품 거래를 위해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6조에 따라 장내파생상품의 투자매매업자 및 투자중개업자에 예치한 위탁증거금과 한국거래소 파생상품시장업무규정 제70조제2항에 따른 상품별 가격제한비율 이내의 초과예치금은 지속기간에 관계없이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하고, 가격제한비율을 초과하는 초과예치금은 익영업일까지 신용공여 산출대상에서 제외

주4) 손실을 초래할 가능성이 적은 다음과 같은 유가증권대여 거래는 신용공여 범위에서 제외
한국증권예약결제원 및 한국증권금융의 유가증권 대차거래중개시스템을 이용한 경쟁방식의 거래

- 거래 상대방이 한국은행 등 결손이 발생할 경우 정부로부터 제도적으로 결손보전이 이루어질 수 있는 기관이거나, 동 기관 또는 정부가 발행한 채권에 의해 담보된 거래
- 주5) 법 제113조에 따라 금지되는 채무보증에 해당 대출약정은 제외한다.
- 주6) 신용공여금액은 재무상태표 해당 항목에 계상된 금액으로 한다. 다만, 난외항목의 경우 재무상태표 난외에 계상된 금액에서 감독원장이 정한 신용환산율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